



〈 산업재해보상보험 〉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2013. 12.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Korea Orthopedics & Rehabilitation Engineering Center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관련 근거	1
III.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2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관련 규정개정	2
2. 산재급여품목에 대한 제품등록제 실시	4
3. 사후관리규정 신설	6
4.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신설	8
5. 수전동 휠체어 추가항목 신설	9
6. 통합재활훈련 급여품목 개정(삭제)	11
□ 붙임 1.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총괄	
2. 수전동휠체어 관련 자료	
3. 통합재활훈련 관련 자료	
4. 통합재활훈련 운영 방안	

I 추진배경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관련 요양급여 기준 개정 필요성
 -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의 민간업체 확대 권고로 연구소 전담지급 8개 품목을 제외한 민간 확대 결정
- 산재보험 별도 지급 중 활동형 휠체어 등 5개 품목에 대한 제품등록제를 실시함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산재급여 제품 지급
-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보험 별도 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불량 제품으로부터 산재장애인 보호 및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 예방 필요성
 - * '12년 재활공학연구소 시험검사센터에서 산재급여 품목 3종(13개 업체 제품)에 사후검사(샘플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품목이 “부적합” 나타났으며 불합격율은 53.8%임
- 수전동 휠체어의 개발완료에 따른 수가 항목 신설로 산재장애인 및 환자에 대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지급
- 재활공학연구소의 신축 청사이전으로('14.1월) 인한 현행 「통합재활훈련 의료기관 요건」 만족 못하여 관련 규정 사문화될 가능성으로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

II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2012.1.1.)

Ⅲ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관련 규정 개정

□ 추진배경

- ‘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관련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에 대한 민간 확대 권고,
 - ‘14년부터 87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추가지급 공급기관은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품질관리 체계 등 마련 후 장기적으로 민간 확대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723(2012. 10.12)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379(2013. 8. 7)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추진 일정 제출요청」
- ‘13년 국내최초 연구소가 개발한 수전동휠체어를 연구소 전담품목에 추가

□ 추진방안

- 민간 확대 대상 품목의 연구소 전담 관련 조항 삭제 및 연구소의 9개 전담지급 가능 품목 명시
 - * 전담지급 가능품목 : 근전전동의수, 유압식/공압식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본체, 베이스), 수전동 휠체어

< 개 선 안 >

현 재	개선(안)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3. . .>

1~9.(기재생략) 10.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지팡이, 목발,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또는 가발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 나.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목을 제외한 재활보조기구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0.4.27.> 11. ~ 14. (기재생략) 15. 이동식 리프트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1. ~ 9. (기재생략) 10. <삭제 2013. . . > 11. ~ 14. (기재생략) 15. <u>근전전동의수, 유압식/공압식 및 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u>, 이동식 리프트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신설 2008.12.31.><개정 2013. . . >
--	--

2. 산재급여품목에 대한 제품등록제 실시

□ 추진배경

- 산재장해인에게 양질의 급여 제품 제공을 위해 명확한 규정정비 필요
-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가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어 의료기기 허가 필수 항목으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5호(2012. 7.10 개정)」

□ 추진방안

- 산재급여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 만족 및 의료기기 신고 또는 허가 등으로 품질기준을 명확히 함

< 개 선 안 >

현 재	개선(안)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0.(기재생략) 11. 활동형 휠체어는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 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신설 2007.3.6> 가. 내구성능 : 더블드럼 테스터(double drum tester)에 따른 ISO7176 내구성 시험 기준 20만회 이상 나. 무게 무게(주행바퀴 제외) : 8kg 이하 다. 등받이 높이 : 시트면에서 280mm 이하 라. 후륜축 조절 기능 : 앞뒤 방향으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0.(기재생략) 11. <u>수동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을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등록 신청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 .></u> 가. <u>수동 휠체어 :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u> 나. <u>활동형 휠체어 : 한국산업표준 KS P 6113규격에 적합하고 다음 각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u>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 12.(기재생략) 13.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07.3.6> 가. 욕창예방방석 :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대부양형은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u>여야 한다.<신설2013. . .></u> - 몸체 무게(주행바퀴 제외) : 8kg 이하 - 등받이 높이 : 시트면에서 280mm 이하 - 후륜축 조절 기능 :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신설 2007. 3. 6> <u>다. 수전동 휠체어 : 수전동 휠체어는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이 만족되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u> <u>라. 욕창예방방석 :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u> <u>마. 욕창예방매트리스: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u> 12.(기재생략) <u>13. <삭제 2013. . .></u>
--	--

3.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요양 급여기준에 의거 산재장애인/환자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나, 등록당시 성능과 안정성이 있는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체계 미비
 -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재활보조기구는 총 97품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78개 품목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지만, 산재보험에서만 지급하는 19품목은 관련 규정 미비로 사후관리가 미 실시

□ 추진방안

- 산재장애인에게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한 산재급여품목공급 및 재활보조기구 사후체계 및 근거마련
- 사후관리를 통한 재활보조기구 판매업체들의 불량제품 공급 원천 차단 및 허위·부당청구 사전예방 도모

< 신 설 안 >

현 재	개 정 (안)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지급원칙]
1. ~ 15.(기재생략)	1. ~ 15.(기재생략) <u>16. 공단은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산재장애인의 의학적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급중인 급여품목 및 업체에 대하여 아래 각목과 같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2013. .></u> <u>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은 산재보험 급여품목의 등록 당시 신고된 성능 및</u>

	<u>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지급중인 제품에 대한 시중수거 시험검사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u> <u>나. 공단은 산재급여품목 등록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에서 거짓이 발견되거나, 사후관리 결과로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u>
--	---

4.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신설

□ 추진배경

- 이동식리프트 배터리교환 기준이 없어 이동식리프트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에게 배터리 지급 곤란

□ 추진방안

- 이동식리프트의 배터리교환은 사용자가 쉽게 교환가능 하므로 별도의 인건비등을 반영하지 않은 배터리 구매원가를 산재보험요양급여 수가로 반영

< 신 설 안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3.(기재생략)			
4. 재활보조기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 보조기		(기재생략)	
휠체어	타-71~타-87(기재생략)		
	타-88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2개1세트) <신설 2013. . . >	40,000
전동스쿠터		(기재생략)	

5. 수전동 휠체어 수가 항목 신설

□ 추진배경

- 수전동 휠체어 개발완료에 따라 산재장애인에게 급여 제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항목 신설 필요

* 개발기간 : 2008.12 ~2013.9(5년)/ 개발비용 : 약 76억원/ 개발완료 : '13.9.30

□ 추진방안

- 수전동 휠체어 수가 신설
 - 수전동 휠체어를 휠체어로 분류하며 수전동 휠체어의 순수 제작원가를 요양급여 수가로 적용
 -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와 동일한 6년으로 지정
- 수전동 휠체어 신규 급여를 위하여, 해당 시험검사규격(식약처 전동휠체어 기준 명시

< 신 설 안 >

현 재	개선(안)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0.(기재생략) 11.(기재생략)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0.(기재생략) 11.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u>수전동휠체어</u> 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2013. .> 가.~다.(기재생략) <u>다. 수전동 휠체어 : 수전동 휠체어는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이 만족되어야</u>

	<u>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신설2013. .></u> 라.~마. (기재생략)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2.(기재생략) 3.기타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2.(기재생략) 3.기타 <개정2013. .>																																															
<table><tr><td>구분</td><td>분류 번호</td><td>분류</td><td>지급 대상</td><td>금액 (원)</td><td>내구 연한</td></tr><tr><td>구두 휠체어</td><td colspan="5" rowspan="2">(기재생략)</td></tr><tr><td>기타</td></tr></table>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 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구두 휠체어	(기재생략)					기타	<table><tr><td>구분</td><td>분류 번호</td><td>분류</td><td>지급 대상</td><td>금액 (원)</td><td>내구 연한</td></tr><tr><td>구두</td><td colspan="5">(기재생략)</td></tr><tr><td>휠체어</td><td colspan="5">활동형 휠체어(기재생략)</td></tr><tr><td></td><td colspan="5">수전동 휠체어(신설)</td></tr><tr><td>기타</td><td colspan="5">(기재생략)</td></tr></table>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 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구두	(기재생략)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기재생략)						수전동 휠체어(신설)					기타	(기재생략)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 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구두 휠체어	(기재생략)																																															
기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 대상	금액 (원)	내구 연한																																											
구두	(기재생략)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기재생략)																																															
	수전동 휠체어(신설)																																															
기타	(기재생략)																																															
	<u>(구분) 휠체어 / (분류번호) 타-32-4</u> <u>(분류) 수전동 휠체어</u> <u>(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u> <u>(지급대상)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신설 2013. .></u> <u>(금액) 3,934,000원</u> <u>(내구연한) 6년</u>																																															

6. 통합재활훈련 급여품목 개정(삭제)

□ 추진배경

- 재활공학연구소의 신축 청사이전으로('14.1월) 인하여 현행 “통합재활훈련 의료기관 요건” 만족 못함 ⇒ 인천산재병원-재활공학연구소 연계 통합재활훈련 지속 운영 불가능
- 통합재활훈련은 보험수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인천산재병원’, ‘서울보훈병원’ 과 ‘신촌세브란스병원’ 3개 소 뿐임. 그러나 ‘13년 현재까지 실제 운영은 ‘인천산재병원’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수가체계 운영 효과성이 없는 실정

□ 개선방안

- 통합재활훈련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규정 삭제
 - 훈련내용 중 ‘등속성 근력강화’와 ‘보행훈련’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의 ‘등속성 운동치료’와 제3절의 ‘보행치료’로 각각 대체 처방이 가능하고,
 -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수가로 제공하기 힘든 ‘동작분석·평가’(비급여로 보통 1회당 수십만 원)와 ‘종합재활훈련은 사실상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실 및 의지제작실에서 ‘사용자적응훈련(ATAD)’으로 실시하고 있어, 품목이 삭제되어도 산재장해인을 위한 지속 운영에는 문제 없음
- ※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의 통합재활훈련 급여품목을 삭제하고, 연구소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붙임 4」

< 개 선 안 >

현 재	개선(안)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1.(기재 생략) 12. 근전전동의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 에 지급한다.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1.(기재 생략) 12. 근전전동의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u><삭제2013. .></u>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개정2013. .>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산정지침] 통합재활훈련대상은 상지·하지의지사 용 절단장애인, 휠체어 사용 마비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료, 훈련내 용 및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요 건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활훈련료, 훈련내용 및 의료기 관 요건] 가. 통합재활훈련료<개정 2007.3.6>	<u>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u> <u><삭제 2013. .></u>

구분	훈련내용	시행 횟수	단가(원)	금액(원)	비고 (참고)
하지의지 사용 절단 장애인 타-67- 가	등속성근력강화	6	5,200	31,200	
	보행분석평가	2	26,050	52,100	
	보행훈련	6	10,420	62,520	
	종합재활훈련	6	10,420	62,520	
	계			208,340	34,720
상지의지 사용 절단 장애인 타-67- 나	등속성근력강화	6	5,200	31,200	
	상지운동분석	2	26,050	52,100	
	종합재활훈련	6	10,420	62,520	
	계			145,820	24,300
휠체어 사용 마비장애 인 타-67- 다	등속성근력강화	6	5,200	31,200	
	휠체어주행분석	2	26,050	52,100	
	종합재활훈련	6	10,420	62,520	
	계			145,820	24,300

<이하 기재 생략>

【붙임1】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총괄

현행	개정요청(안)	개정사유	비고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1. ~ 9. (기재생략) 10.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중략)...인정되는 경우<개정 2010. 4.27.> 11. 활동형 휠체어는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신설 2007.3.6> 가. 내구성능 : 더블드럼 테스터(double drum tester)에 따른 ISO7176 내구성 시험기준 20만회 이상 나. 무게 무게(주행바퀴 제외) : 8kg 이하 다. 등받이 높이 : 시트면에서 280mm 이하 라. 후륜축 조절 기능 :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3. . .> 1. ~ 9. (기재생략) 10. <삭제 2013. . .> 11. 수동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는 해당제품을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 .> 가. 수동 휠체어 :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나. 활동형 휠체어 :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고 다음 각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신설 2013. . .> - 무게 무게(주행바퀴 제외) : 8kg 이하 - 등받이 높이 : 시트면에서 280mm 이하 - 후륜축 조절 기능 :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신설 2007. 3. 6>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일부 품목 제외, 추가지급 경우도 민간업체 참여) ■ 산재보험 별도 지급 19개 품목 중, 활동형 휠체어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제품등록제를 실시 ■ 활동형 휠체어 등 5개 급여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 만족 및 의료기기 신고 또는 허가 등으로 명확히 함	■ 근전전동의수 등은 연구소가 전담 지급 ■ 기개정 요청 사항(추가 수정) 「운 영 지 원 부 -7706('12.11.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요청(안 제출)」

현행	개정요청(안)	개정사유	비고
	다. 수전동 휠체어 : 수전동 휠체어는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이 만족되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라. 욕창예방방석 :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 마. 욕창예방매트리스: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	■ 수전동 휠체어 신규 급여를 위하여, 해당 시험검사 규격(식약처 전동휠체어 기준) 명시 ■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 45 호(2012. 7.10 개정)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어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는 문구 삽입	■ (추가개정 요청) 2014년 신규 급여화 품목 ■ 기개정 요청사항 「운영지원부-7706 (‘12.11.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요청(안 제출)」
12. 근전전동의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신설 2007.3.6.>	12. <u>근전전동의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 .></u>	■ (통합재활훈련 품목 삭제시 적용) 관련 “ <u>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u> ” 부분 삭제	■ 추가 요청사항
13.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신설 2007.3.6>	13. <u><삭제 2013. . .></u>	■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 매트리스 시험검사 관련 기준 규격을 <u>앞의 제11조로 통합</u>	■ 기개정 요청사항 「 운영 지원 부 -7706(‘12.11.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요청(안 제출)」
가. 욕창예방방석 :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대부양형은 의료기기 허가를 필요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요청(안)	개정사유	비고
14. 집노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신설 2008.12.31>	14. (현행유지)	-	-
15. 이동식 리프트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15. <u>근전전동의수, 유압식/공압식 및 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 .></u>	■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지급 품목 중 8개 전담지급 가능 품목 명시	■(추가개정 요청) 수전동 휠체어 포함시 9개 품목에 대하여는 재활공학연구소가 직접 지급을 담당
<신설>	16. <u>공단은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산재장해인의 의학적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급중인 급여품목 및 업체에 대하여 아래 각목과 같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2013. .></u> 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은 산재보험 급여품목의 등록 당시 신고된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지급중인 제품에 대한 시중수거 시험검사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나. 공단은 산재급여품목 등록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에서 거짓이 발견되거나, 사후관리 결과로 부적합 판정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보험 별도 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불량 제품으로부터 산재장해인 보호 및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 예방	■기개정 요청사항 (추가 수정) 「운영지원부-513X '13.5.2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품 품질관리 개선방안제출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요청」

현행						개정요청(안)						개정사유	비고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3. . .>							
1. 의지 <기재생략> 2. 보조기 <기재생략> 3. 기타 <기재생략>						1. 의지 <기재생략> 2. 보조기 <기재생략> 3. 기타 <기재생략>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구 두	타- 31	평상구두 (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 (high top shoe)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정 성에 따른 관절운동 제한으로 평상화로는 정상보행이 불가 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 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 용해야 하는 경우)	139000	2년	구 두	타- 31	평상구두 (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 (high top shoe)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 정성에 따른 관절운동 제한 으로 평상화로는 정상보행 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 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39,000	2년		
		다. 안장 구두 (rocker bottom shoe)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으 로 평상화로는 정상보행 이 곤란한 경우	131000	2년			다. 안장 구두 (rocker bottom shoe)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 으로 평상화로는 정상 보행이 곤란한 경우	131,000	2년		
휠체 어	타- 32- 3	활동형 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 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756000	5년	휠체 어	타-3 2-3	활동형 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 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 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756,000	5년		
							타 -32- 4	수전동 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 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 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 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 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 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신설 2013. >	3,934,000	6년	■ 수전동휠체어 수가신설	■ 신규 요청사항
기타		기재생략				기타		기재생략					

현행				개정요청(안)				개정사유	비고
4.재활보조기수리료				4.재활보조기수리료				-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신설 ·원당초:92천원 ·조정:40천원	·기개정 요청사항 「운영지원부-7706(12.11.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요청(안)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 보조기		(기재생략)		팔의지 ~ 보조기		(기재생략)			
휠 제어	타-71~타-86(기재생략) 타-87	 〈삭제〉		휠 제어	타-71~타-87(기재생략) 타-88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2개1세트) 〈신설 2013. .〉 40,000				
전동스쿠터		(기재생략)		전동스쿠터		(기재생략)			

【붙임2】

수·전동 휠체어 상용화 계획(요약)

□ 개발개요

- 과 제 명 : “Barrier-free 휠체어 기술 개발 과제(산업통상자원부)
 - 개발기간 : 2008.12 ~2013.9(5년)
 - 개발비용 : 약 76억
 - 개발완료 : ‘13.9.30
 - 개발 건에 대한 산재장애인에게 지급예정
 - 직무지원형 : ‘ 13.10월
 - 산재환자 : 산재요양급여기준 등재 이후
- ※ 다만, 개발 초기임을 고려하여 그동안 대기중 산재장애인들의 고충해소를위해 200대 범위내에서 연구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개발효과

- 재활공학연구소가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 「Barrier-free 휠체어 기술 개발 과제」로 개발된 수·전동 휠체어의 상용화 추진
 - ⇒ 가격경쟁력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큼(독일/일본산 600~900만원 수준)
- 수·전동 휠체어의 우수한 기능에 대한 산재장애인들의 인지도가 높아 사용욕구가 높은 품목이었으나 고가 외산 제품으로 가격장벽이 컸음
 - ⇒ 우수제품의 국산화하여 산재급여 품목으로 산재장애인에게 제공으로 연구소의 산재보험시설 기능 수행

◇ 수동휠체어의 기능 ◇

- 바퀴착탈 기능 및 경량으로 개발된 승용차 트렁크 등에 탑재 운반 가능하며 거실 등 실내 사용이 가능
- 전동모드 전환으로 장거리 이동이나 오르막길 등에서 체력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 및 보호자 없이 이동가능
-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완전 방전시에도 수동으로 응급처치

참고 자료 1

수전동 휠체어 제작원가

구분		개수	가격(원)
재 료비	합계	35	3,934,000
	구동부	계	1,841,100
		드라이버	300,000
		모터	685,900
		감속기 모듈	254,000
		수전동 전환 부품	58,200
		구동부 착탈 장치	75,000
		휠허브	260,000
		허브,스포크,타이어 조립	140,000
		구동모듈 조립	68,000
	배터리	계	732,000
		battery pack	609,000
		충전기	123,000
	차체 / 부속	계	1,164,210
		조종기 4bar link 모듈	31,300
		전도방지모듈	71,800
		brake 모듈	137,320
		차체 조립	110,400
		battery soft case	40,000
		조명 모듈 케이스	24,000
		수동차체 제작	360,000
		배선함	70,200
		조종기 케이스 부품 및 조립	70,300
		조이스틱	88,400
		조이스틱 제어기	103,030
		전조등, 조명	31,460
		인터페이스 보드	22,000
		반사판	4,000
	기술료		196,690
	부가가치세		0

* 천원단위 절사

⇒ 원가용역산출 결과는 4,854천원이나 제작원가만 반영한 3,934천원을 산재요양급여 수가로 책정

※ 원가용역 산출자료 별도 첨부(서면)

참고 자료 2

수전동 휠체어 제품 및 국내 시장 현황

제 품 명/제 조 사(제 조 국)	국 내 시 판 가 격	제 품 사 진	주 요 기 능 및 특 징
JW series/YAMAHA(일본)	- ¥476,000(홈페이지 가격) - 4,881,000원(건강보험 고시가격) * 실제 소비자가격은 7백만 원대로 건강보험 급여부분 209만원을 제외한 약500만원의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		- 건강보험 급여품목 제품 등록 - 초경량 : 무게 27(S-type) or 28(P-type) kg - 니켈수소/리튬전지 사용 - 수동/전동 운전 가능 - 사용자 몸무게 100kg - 휠 탈착 가능 - 니켈수소 전지 15km 주행. 리튬전지 30km 주행 - 최대속도 4.5km (6km 조종가능)
e-fix/Alber(독일)	- £3,666 이상 (인터넷 가격) (637만 원 이상)		- 보험급여로 미등록 (자비 구매 유통 상태) - E25 모델은 120kg, E26은 160kg 탑승가능 - 납축전지 12Ah(E25) or 17Ah(E26) 사용 - 휠, 배터리 원터치 탈착 가능 - 16km(E25), 26km(E26) 주행 가능
Power Wheelchair/ Shenzhen ODET(중국)	- (?)		- 보험급여로 미등록 (자비 구매 유통??) - 납축전지, 리튬전지 적용가능 - PG사 드라이버와 조종기 사용 - 납축 12Ah 전지는 8km 속도로 20km 주행 - 리튬 9Ahx2 전지는 8km 속도로 25km 주행 - 사용자 몸무게 120kg

【붙임3】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프로그램(IRP)」 운영 현황

○ 개요

- 통합재활훈련은 의료 인력과 의지보조기 기사 등이 연계되어, 재활의학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라 1인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팀 서비스 재활프로그램으로, 운동물리치료(의료 부분)와 사용자적응훈련(재활의료공학 부분)으로 구성됨.

○ 운영 실적

단위: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1월 현재
인천산재병원 (등속성강화훈련/보행훈련)	858	927	1,505	1,544	746	724
재활공학연구소 (보행분석/종합재활훈련)	509	595	547	834	522	863
계	1,367	1,522	2,052	2,378	1,268	1,587

○ 세부 내용(요약)

분 야	훈련 내용	대상자	세부 내용	비 고
재활의학 (IRP-PT : 운동물리치료)	등속성 근력강화	-상지/하지 절단 -하지 마비(척수손상)	- 상지/하지의지,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약화된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등속성 운동치료	건강보험 이학요법/분류번호 사-116, 코드 MM103과 유사
	보행훈련	-하지 절단	- 하지의지 착용자에게 대한 보행치료	건강보험 이학요법/분류번호 사-130, 코드 MM302과 유사
재활공학 (IRP-ATAD : 사용자적응훈련)	운동분석·평가	-상지/하지 절단 -하지 마비(척수손상)	- 잔존 및 건축 근골격계에 대한 운동기능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최적화 보조기구 설계/선정 - 특정 보조기구 사용 전/후 동작기능 비교분석 - 상지 근육별 근전도 측정 및 평가 분석 - 휠체어 추진동작 상지 운동 분석 및 평가 등	국내 민간 의지·보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2014년 현재까지는 재활공학연구소만 유일하게 요건 만족되는 운영기관임
	종합재활훈련	-상지/하지 절단 -하지 마비(척수손상)	- (상지) 근전센서 부착 위치 확인 및 신호 강도 조절 및 최적화 장치 조합 설계 및 선정 - (하지) 개인별 지능식 보행속도 조절장치 세팅 및 최적화 관절장치 조합 설계 및 선정 - (마비) 최대 효율 운동에너지 측정 및 무게 중심 위치 보정과 바퀴축간 거리 조정 작업 등	

【붙임4】 : 병원-연구소 업무협의 회의 자료

통합재활훈련 관련 업무협의 자료

□ 현황 및 문제점

- 재활공학연구소와 인천산재병원은 연계사업으로 “절단·마비 장애인”의 보조기구 적응훈련을 위한 통합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있지만,
 - 연구소가 '14.1월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상 불일치로 지속운영의 어려움 문제 발생

※ 연구소의 제작실 및 보행분석실이 원외로 이전하여 통합재활훈련 의료기관 요건 불충족

◇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다. 통합재활훈련 의료기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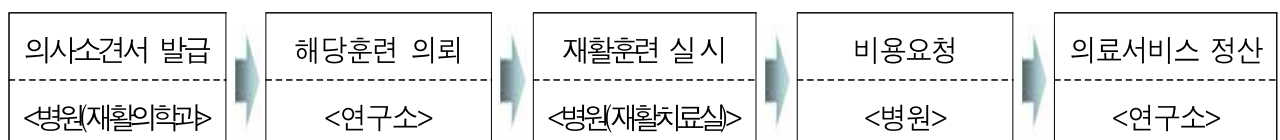
- 인원 :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지및보조기 제작기사, 임상운동분석가
- 시설 : 재활의학과, 3차원 운동분석실, 운동훈련·치료시설, 의지 및 보조기 제작시설이 동일 구내에 있는 의료기관 및 업체

- 그러나, 통합재활훈련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세부실행계획” 핵심추진과제로, 운영 중단 시 사업계획 불이행 상황 발생

□ 향후 운영에 대한 방안(연구소 의견)

-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의 통합재활훈련 급여품목 삭제하고, 연구소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근력강화·보행훈련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해당 품목 중 ‘근력강화훈련’과 ‘보행훈련’은 병원에서(연구소의 의뢰로) 지속 운영